# - 2023년 1월 중 -

# 불법어업 지도 · 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 1 육·해상 지도·점검 계획
-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포획·유통·판매 현장 특별점검
  -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어업 사전예방을 위해 승선 점검 강화,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 유통·판매 집중 점검
    - \* `22.1.16(월)~'22.1.20(금) / 연근해 全어선 및 수산물 유통처(위판장, 수산시장 등)
- □ 김장철 경남 새우조망 불법어업 합동 단속
  - 조업구역 이탈(부산지역), 혼획율 위반, 어구(날개그물, 막대 등) 위반, 혼획저감장치 미부착, 입·출항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점검
    - \* (기간/참여기관) `22.11월~'23.1월 / 경남도(주관), 동해어업관리단, 부산시, 해양경찰
- □ 대구 포획금지기간 중(1.16.~2.15.) 불법포획·유통 점검
  - <sup>①</sup>진해~거제~부산 인근 허가구역 외 호망어구 부설·사용 및 무허가 호망 조업, <sup>②</sup>금지체장 위반(35cm), <sup>③</sup>금어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점검
- □ 어종별·업종별 주요 위반행위 감시
  - (문치가자미) 금어기(12.1~1.31) 중 통발·자망 등 포획 및 유통·판매 행위
  - (TAC) 살오징어 등 TAC 대상 어종 및 업종의 초과 어획, 어획량 미보고·거짓보고, 사매매 행위 등 육·해상 집중 감시
  - (기타 업종별) 잠수기 불법어구(흡입기, 분사기 등) 사용 및 마을 어장 침범 조업, 소형저인망(일명 '고데구리')조업 육·해상 점검 실시

#### □ 동해안 대게 불법어업 집중단속

○ 암컷,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 및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 붉은대게류 통발사용금지구역(주11해역\*)'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 < 중점 단속대상 >

- ◈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 등 불법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 ◈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 대게포획금지(연중, 주11해역)
- ◆ 그물코 금지 규격(통발 150mm이하, 자망 240mm이하) 위반
- ◈ 대게 TAC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거짓보고, 사매매 행위 등

## □ 동해안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트롤-채낚기) 집중 단속<sup>(지속)</sup>

- ㅇ 트롤-채낚기간 공조조업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단속 실시
  - (주요대상) 공조조업(트롤-채낚기), 128도 이동조업금지(대형트롤), 광력기준 위반(채낚기), 현측식 트롤 선미식 조업 행위(동해구중형트롤) 등
  - \* (기간/주관) `22.10.~어기 종료까지 / 동해어업관리단

#### □ 조업구역·조업금지구역 및 어구사용 금지구역 조업행위 감시

- 관할해역 근해업종(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쌍끌이중형 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 등)의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감시
  - \* 조업구역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동해구-서남해구 저인망 조업구역 분리(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3])
  - \*\* 조업금지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별도1]

## □ 접경수역 우리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 예방

- 외국EEZ 경계 근접조업 어선(서남구저인망·근해자망 등)에 대한 지 도·홍보 강화 및 EEZ침범 조업 사전차단
  -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의 세계측지계(WGS-84) 사용
  - \* ①'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u>혼용 사용으로 인한 항행 위험</u> 주의, ②동경측지계로 사용한 어장위치(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사용시 반드시 좌표 변환
  - 위치발신장치 작동여부 확인, 모니터링시스템 활용한 감시강화, 통신지도
  -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과태료 처분(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2 낚시관리 및 육성법

#### □ 낚시제한 기준 준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포획금지체장· 체중, 포획 금지기간 등 준수(제7조) 및 낚시승객 대상 교육·홍보

####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의2)

####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준수

○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영해) 내에서 영업 하여야하며(제27조), 낚시객을 어선원으로 위장한 영업 절대 금지

# 3 내수면

- □ 지도점검 계획 : 1월 중 / 정보 수집
  - 지역/대상 : 충북 / 유어객, 내수면어업인 및 불법 내수면어업인
  - ㅇ 주요 점검 사항
  - 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이용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무허가 어업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어구 이용 포획·채취 등 유어질서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동력기관(가솔린, 디젤, 전기모터 등)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류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 포획금지 기간·구역·체장 위반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구역·체장 [붙임4] 참고

<포획금지 체장>

품명	다슬기	쏘가리	참게· 동남참게	뱀장어	산천어	송어	황복	말조개
체장(cm)	각고 1.5이하	18이하	5이하	15이상~45이하	20이하	12이하	20이하	9이하

\* 기수재첩 : 섬진강 각장 1.2cm 이하,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cm이하

#### □ 주요 점검사항

-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위반 여부(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등)
  - \* 어선법 제23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사유 없이 임의로 전원을 끈 경우 과태료 처분
  - \* 과태료 기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어선의 명칭등의 표시 위반 행위 지도·점검
  - 소규모 항·포구 어선 대상 선미부 선명·선적항 미기재, 어선표지 판 손괴 여부 및 낚시어선 선명 영문기재 여부 중점 확인[붙임5]
  - \*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은폐·변경·제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선법 제53조에 따라 미표기 시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ㅇ '23년 상반기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 일제정비 실시
  - 어선중개업 변경사항 미등록 또는 무허가 어선중개 행위\* 여부 등
  - \* 어선법 제 31조의2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 면세유

- □ 지도점검 계획 : 1월 중
  - 지역/대상 : 경북·경남 / 관리기관, 선박·시설 등 공급대상 사용자
  - 주요 점검 사항 : (공통)관리부실에 의한 부정공급, 용도 외 사용, 사용자 실제 여부 및 공급요건 해당 신고사항 이행 등, (해수면)낚시 어선업 공급 조건 충족 여부 및 출입항 신고 구분관리 일치 여부 등, (내수면)공급대행 주유소 착색제 첨가 공급 유무, 환급·공제세액 초과 신청 등
- □ 관리기관·어업인·석유판매업자별 주요 점검사항 : [붙임3] 참고

#### □ 겨울철 기상악화 시 출어선 안전관리 강화

- 관할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을 해경 또는 어업관리단에 통보
  - \* 위치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 과태료(150만원-250만원-500만원)
- ○「어선안전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
  - \*「어선안전조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조업선은 신고기관으로부터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에 확인을 받은 후 어선에 비치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3조에 규정된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은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위치통지 지정시간부터 6시간 경과 후\*로 정함
  - \* 기상특보 발효 중 위치보고 지정시간에 위치통지가 없는 경우 즉시 통보
- 기상특보(태풍·풍랑·폭풍)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 구명조끼 의무 착용\*
  -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처분(90만원-150만원-300만원)
-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15톤 미만 어선 출항금지. 다만, 태풍 및 겨울철\*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30톤 미만 어선 출항금지
  - \* 11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 기간 중
- ㅇ 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준수
  - \* 1일 1~3회 위치보고+풍랑특보(12시간 마다), 태풍특보(4시간 마다)시 추가 위치 보고

### 붙임1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규정

□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42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별표2]

품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개서대	26cm	민어	33cm	대게	9cm
문치가자미	17cm ('24년 이후 20cm)	참가자미	17cm ('24년 이후 20cm)	용가자미	17cm ('24년 이후 20cm)
방어	30cm	볼락	15cm	닭새우	5cm
감성돔	25cm	붕장어	35cm	펄닭새우	10cm
돌돔	24cm	조피볼락	23cm	백합	5cm
참돔	24cm	쥐노래미	20cm	소라	5cm(제주 7cm)
황돔	15cm	키조개	18cm(부산,울산, 강원, 경북,경남)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4cm(제주)
넙치	35cm	참홍어	42cm	전복류	7cm(제주 10cm)
농어	30cm	꽃게	6.4cm	기수재첩	1.5cm
대구	35cm	갈치	18cm(항문장)	대문어	600g(중량)
도루묵	11cm	말쥐치	18cm	고등어	21cm
참조기	15cm	황복	20cm	갯장어	40cm
살오징어	15cm(외투장)	미거지	40cm	기름가자미	17cm ('24년 이후 20cm)
청어	20cm	털게	7cm(강원)		•

□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수심(44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품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개서대	7.1~8.31	대구	1.16~2.15.
새조개	6.16~9.30(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소라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문치가자미	12.1~익년 1.31	전복류	9.1~10.31(제주 10.1~12.31)
연어	10.1~11.30	코끼리초개	4.1~7.31(강원, 경북)
전어	5.1~7.15(단, 강원, 경부 제외)	키조개	7.1~8.31
쥐노래미	11.1~12.31	가리비	3.1~6.30
참홍어	6.1~7.15	개다시마	11.1~익년 1.31
참조기	7.1~7.31(단, 유자망 4.22~8.10)	감태	5.1~7.31(제주 연중)
꽃게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참문어	5.16~6.30 단, 시·도지사가 5.1~9.15기간 중 46일 이상 별도고시 가능*
대게	6.1~11.30	대황	5.1~7.31
붉은대게	7.10~8.25(단, 강원연안자망 6.1~7.10)	넓미역	9.1~11.30(제주) 단, 지자체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털게	4.1~5.31(강원)	도박류	10.1~익년 4.30
닭새우	7.1~8.31	뜸부기	8.1~9.30
대하	5.1~6.30	우뭇가사리	11.1~익년 4.30
필닭새우 백합	6.1~8.31		10.1~익년 1.31
맥압	7.1~8.20	해삼	7.1~7.31
갈치	7.1~7.31(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북위 33도 이남 제외)	살오징어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고등어	5.4~6.3(2023년)	말쥐치	5.1~7.31(단, 정치망, 연안, 구획어업 6.1~7.31)
옥돔	7.21~8.20	낙지	6.1~6.30(지자체 고시 별도)
오분자기	7.1~8.31	명태	1.1~12.31
주꾸미	5.11~8.31	<u>삼치</u> 곰피	5.1~5.31
감성돔	5.1~5.31	곰피	5.1~7.31

<sup>\*</sup> 별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경남·전남) 5.24~7.8./(제주도)8.1~9.15.

# 붙임2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홍보물(2023년 기준)

1 2 3 기술장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공제 당재건당) 대체를 됐다셔우 도구목 상소전하여부터 교치 참 등기를 갖지했다는 이 전 대한 진학유(시점) (강한 (강전) 경제 됐다. 중요구 (주23(23)) 기원기 등록	22 23 24 25 26 등어 조퍼블랙우리 등등 강성동 개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생아 생아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39 40 41 쑛장이 참 미거지 개
종	명	금지 계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종 명	금지 체장	금         지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갈치		행보장 결권 이희당 중 해당 채강의 결과를 20% 비만으로 7.1- 18cm 교회 - 채취하는 경우 제외 7.31+ 10% 비만으로 포희 - 채취하는 경우 제외 12% 바라 기간 중 결과를 이해당의 12% 바라 경우 제외 12% 바라 기간 중 결과를 이해당하는 경우 제외 12% 바라 기간 기관	대하	_	5.1~6.30	_
감성돔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25cm 517 531	민꽃계		복부 외부에 많이 붙어있는 민물개의 입컷 : 연중포화금지	
개서대	(a)	26cm 7.1~8.31	붉은대게		붉은대게의암컷: 면중포회금지 7.10- 8.25	강원도 연안지망어업은 6.1~7.10
갯장어	1	40cm	털게	7cm, (강원도 한정)	4.1~5.31	
고등어		21cm আন্তর্গালন্ত বিশ্ব বিশ্	필닭새우	10cm	6.1~8.31	
기름가자미	0	17Cm (~302123)) *2024.1.1일부터 20cm이라 포휘·제취급지	가리비		3.1~6.30*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벌표1, 주)7의해역에 한정
넘치(광어)	-	35cm	기수재점	1.5cm		
농어		30cm	마대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 한경)		
대구	-	35cm 1.16- 2.15	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 한정)	7.1~8.31	
도루묵	- mary	11cm	백합	यस 5cm	71~8.20	
돌돔	4104	24cm	새조개 🧼	-	6,16~9.30	다만,부산,물산,경남,천남(무안 영광제외),제주는6.1~9.30
말쥐치	480-4	18cm 5.1~7.31 정치망·연안·구훼어입은	소라	文を5cm (株別な、銀数な、 を5-800 Acm)	機体が必要を行る第一 本が本の理察を大方を取 要認に発生する第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참고
명태	-	- 연중포확금지	전복류	격광/km. (제주도성원 (Don)	9.1~10.31	제주특별자치도는 10.1~12,31
문치가자미	-	17cm (-MZA1723) ~1.31 12.1~ *2024.1.1일부터 20cm이하 포회: 채취급지	키조개	考表 18cm。 (200 200 234 (200 200 344)	7.1~8.31	
미거지		40cm	코끼리조개	-	4.1~7.31	
민어		33cm	낙지 🥌		6.1~ 시 도지사가 4.1~9.30까지 기간등 1개월이상의 6.30 기간을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함	- 영남 6.16-7.31, 전날, 경기, 인전 6.21- 7.20 왕남이 되면 연근 선택 (본) 4.1-5.11
방어	-	30cm	대문어 💃	600g		
볼락	1004	15cm	살오징어	15cm	(12-00-000-000-00-00-00-00-00-00-00-00-00-	근해제하기, 면반되면이업. 강세강이업은 4,1~4,00
붕장어	2	35cm	주꾸미 🥌	_	511-831	382,1016,000,200,000
삼치	-	- A Si	참문어 활동	-	5.16~6.30 사·도지사가 5.1~9.15까지 기간을 46일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교사하는 경우 그 기간 으로 함	*경남, 건남 5.24~7.8, 제주 8.1~9.15
연어	THE REAL PROPERTY.	<del>-</del> 10.1~11.30	해삼	*	7.1-7.31	,,
옥돔		7.21-	감태,검둥감태	-	5.1~7.31	제주특별자치도는 1.1~12.31
용가자미		17Cm (-/(2t1/31) *2024.1.1일부터 20cm이하 포희· 채취 금지	개다시마	-	~1.31	
조피볼락(우럭)	-	23cm	공피	-	5.1~7.31	-
전어	-	5.1~7.15 강원도및 경상북도는 제외	넓미역	-	9.1~11.30 apartencing	41번, 회주도지사가도 1~11,30기간 중 3개월이상의기간중이로 등하여 고사하는 경우 해당기간으로 합
취노래미	-	20cm 11.1~12.31 수산자원라리비사형량 (별묘1) 구33의 해택되셔는 11.15~12.14	대항	-	5.1~7.31	- THE BY HOUSE IS
참가자미	-	17Cm (-AIZI12JI) *2024.1.1일부터 20cm이하 포함: 채취급지	도박류 (진도박,먹도박)	=	~4.30 10.1~	
참돔		24cm	뜸부기	-	8.1~9.30	
참조기		15cm 참고기이화당 중해당대장의 참조기를 가는 해당기간 중함조기를 여행당의 근해자양이법 중 유지명을 10% 이번으로 표확 대해는 경우 제이 사용하는 경우 제 10% 이번으로 표확 대해는 경우 제 10% 이번으로 표확 대해	우뭇가사리 🦚	-	~4.30	-
참홍어	-	42cm 6.1~7.15	<b>吳</b>	-	-1.31 10.1~	
청어		20cm	수산동물의 종류별 제장 계측도			
황돔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15cm		조 • 다만, 갈3	N, 고등아, 참조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6943호, 2016.2.3.)에 따라 금자체장 규정을 작	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황복	-	20cm	어류		오징어류 매유	갑각류
꽃게	- Sec.	6.4cm	항문장		외투장	(2)
닭새우	<b>54-4</b>	5cm 7.1~8.31			212	두 등 감장
대계	5	9cm 대학생 역출로 환경 6.1~11.30 등명(대학생 연출소 하는 10.11	건강	제반	작장 사 두흠갑장	4 7

# 붙임3 면세유 주요 점검시항

# □ 주요점검 사항

점검 대상	점검내용	제재사항			
관 리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sup>*</sup>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기 관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사망· 이어(離漁)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 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어 업	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인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ul> <li>◆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li> <li>- 어업 등에 대한 제한(취소, 감척 등) 등으로 어업을</li> <li>→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li> <li>- 「수산업법」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li> <li>→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li> </ul>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석 유 판매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업자	※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조특법 제106조의)				

# 내수면어업법 안내 홍보물



H수면	어업의	종류 @:
. 면허0	H업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업의 방법 및 규모
	조방(組放) 양식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 · 호수 · 늪 · 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어업
	가두리 양식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양식 어업	수8년 양식	수중에 대·지주·뜸·빗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HIEFAI	A DIOLUCIO OLOGIO TELLINE E ALLE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 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면적 500벡타르 이상의 댐ㆍ호수ㆍ높ㆍ 저수지 및 하천에 각당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및 규모
자망어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벡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종묘채포어업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연승이업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 벡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어업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 손돌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 잠수기: 아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당정망어업 • 각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 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해서는 아니 5	데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템도 또는 분사장치를 불이거나 사용 IPI, 일물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자사 '시장·이 에 해당 어법의 하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접 여건을 고려

포획·채취 금지 구역·기간·체장 

#### 포획금지 기간·구역·체장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 17조)

	상면, 상목	4.20 ~ 5.20, 9.1 ~ 10.31	- <del>-</del>	
은어	강원, 경북 제외 모든 지역	4.1 ~ 4.30, 9.15 ~ 11.15.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 활용 시 관합 특별자되도자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원을 평가 한 후 한시적으로 포확하가 가능)		
연어	전국	10.11 ~ 11.30	-	
빙어	전국	3.1 ~ 3.20	12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4.20 ~ 5.30. (댐 - 호소는 5.10 ~ 6.20)	18cm 0 8}	
쏘기리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제외 모든 지역	5.1~6.10. (댐 - 호소는 5.20~6.30)		
열목어	전국	3.1 ~ 3.20	140	
침게 동남참게	강원도 다만, 댐 제외	3.1 ~ 11.30	5cm 0 8}	
다슬기	전국	12.1 ~ 2.28	각고 1.5cm 0원 (참·곳체·주름· 좀주름다슬기 포함)	
벤장어	전국 다만, 댐 · 호소 제외	10.1 ~ 3.31.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 뱀정어 금지기간 포획 가능)	15cm ~ 45cm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불법 유어행위



사용이 금지된 어구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유어행위 시 사용이 허용된 어구와 장비







|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대











# 어선 명칭등의 표시 안내 홍보물



# 어선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어선의 선주는 선수 양현에 선명과, 선미외부에 선적함·선명을 표시해야 하며(IDcm 크기 이상), 은폐·훼손하거나 미표기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어선법 제16조)

★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은폐·변경·제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선법 제53조에 따라 미표기 시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국) 선명은 10cm크기이상의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영문 X)



